

		심의결과	원안대로가결
議案番号	會議次數	會議日字	提議者
第 44 号	第 23 次	1987. 8. 6	朴 聖 相

議 案 : '金融機關與信運用規程' 改正

議決事項 : '金融機關與信運用規程'을 불임과 같이 一部 改正한다

提議關係 : '韓國銀行法' 第7條
法規條項

提議趣旨 : 金融機關의 與信業務와 관련한 預·積金 등의 加入要求를 不健全
與信行為로 規定함으로써 金融機關의 兩建預金 受取에 따른 企業의
實質 金融費用 上昇 및 通貨指標의 歪曲에 따른 通貨信用政策의
有効性 저해 등 諸般 問題點을 解消하고 健全한 金融去來秩序를
確立하기 위하여 本件 前記와 같이 議決할 것을 提議함

参考事項：提議關係 法規條項의 발췌

韓國銀行法 第7條

- ① 韓國銀行에 金融通貨運營委員會를 둔다
- ② 金融通貨運營委員會는 이 法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通貨信用의 運營管理에 관한 政策의 樹立과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機能과 極限을 行使하며 韓國銀行의 業務, 運營, 管理에 관한 指示, 監督을 한다
- ③ 金融通貨運營委員會는 第2項의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規程, 指示를 발할 수 있다

(以 下 省 略)

現 行	改 正 (案)	備 考
第1條 (省 略) 第2條 (與信運用 및 投資指針) 金融機關은 韓國銀行法 第73條 第1項 第2號에서 定하는 不健全한 與信 또는 投資를 招來하지 않도록 다음 事項의 遵守에 努力하여야 한다. 1. 原則的으로 自体調達財源 範圍內에서 資金運用 2.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한 與信의 地域別 및 部門別 균점 배분 3. 사치성향적 消費나 投機를 助長하는 등 不要不急한 部門에 대한 與信의 抑制 및 企業의 技術開發과 生産性向上을 促進하기 위한 金融의 支援 4. 借主의 所要資金 規模와 綜合的인 信用의 分析을 통한 適正한 與信의 供給 및 與信取扱後 用途外 流用与否와 借主의 信用狀態 變更狀況等の 把握을 통한 與信의 効率性和 健全性 維持	第1條 (現行과 같음) 第2條 (與信運用 및 投資指針) 金融機關은 韓國銀行法 第73條 第1項 第2號에서 定하는 不健全한 與信 또는 投資를 招來하지 않도록 다음 事項의 遵守에 努力하여야 한다. 1. (現行과 같음) 2. (") 3. (") 4. (")	

現 行	改 正 (案)	備 考
5. 非業務用 不動産의 担保取得에 따른 企業의 不動産取得 助長의 防止 및 同業者 相互保證이나 信用保証基金에 의한 信用保證制等の 活用을 통한 信用에 의한 与信取扱의 拡大 6. 金融機關与信에 過多하게 依存하는 企業 및 系列企業群에 대한 財務構造 改善과 直接金融의 誘導을 통한 過多与信의 抑制 (新 設) 7.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의 拡大, 특히 市中銀行 및 韓國外換銀行은 元貸金融資金 貸出 增加額의 35%以上, 地方銀行은 80%以上, 外國銀行国内支店은 35% 以上(韓國銀行으로부터 상업어음제한인을 받지 않기로 한 外國銀行国内支店은 25%이상)을 各各 中小企業者에게 支援 8. 韓國銀行總裁가 定하는 貸出, 投資, 支給保証 및 引受業務의 取扱基準과 用途別 限度의 遵守 第3條~第12條 (省 略) (新 設)	5. (現行과 같음) 6. (") 7. 与信業務와 관련된 預·積金 等の 加入 強要 止揚을 통한 金融去來秩序의 健全化 8. (現行과 같음) 9. (") 第3條~第12條 (現行과 같음) 附 則 이 規程은 1987.8.6. 부터 施行한다.	銀行의 兩建預金 受取 規制 号 遵下 号 遵下 施行日字 明示